【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17-103호】

# 2017년 국비유학생 추가 선발 시험 공고

2017년 국비유학생(저소득층) 추가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 I.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

전형			이워	유학국가		
_ 신영   	연구분야	전공분야	인전			
					아시아 국가	
	지역 연구	개별 국가 및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해당 유학지역과 관련된 연구의 제분야		러시아 · CIS국가 · 유 럽(영국제외)	
		지역연구	※ 자비유학기회가 많은 미국, 영국 등은 제외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제외) ·오세아니아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기초 학문 연구	인문과학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과학 제분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학문 사회과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제분야		
		자연과학	4명			
	미래 성장 동력 연구	미래 신산업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등 미래신산업 제분야		유학대상국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5G이동통신, 고기능무인기 등 주력산업 제분야		제한 없음	
		- '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신재생에너지 하이므라드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등 기반산업 제분야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의 중동·아프리카 응시자는 영국 런던대(SOAS)에서 유학 가능
-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
- 。 선발인원 미충원시 기술·기능인전형으로 미충원 인원 규모를 전환해서 선발 가능

## 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2. '[].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함)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 3.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추천서로 대신함). 단, 독학자의 경우는 제외
-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5.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준표 내 외국어 시험 중에. 2015. 1. 1. 이후 실시된 유학대상국가의 상용어 또는 영어 시험

(441716 0471647								
외국어	시험명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외국어	시험명	응시 가능 기준 점수			
	TOEFL(IBT)	93점 이상		DELF/DALF	DELF B1 이상			
	TOEFL(CBT)	237점 이상	프랑스어	FLEX	701점 이상			
	TOEFL(PBT)	583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영어	TEPS	650점 이상		독일어능력검정시험	Coethe-Zertifikat Bl이상			
	IELTS	6.0 이상	독일어	TEST-DAF	TDN-3 이상			
	FLEX	651점 이상	무현이	FLEX	701점 이상			
	TOEIC	820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JLPT	N2 100점 이상		DELE	B2 70점 이상			
일본어	JPT 740점 이상		스페인어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TORFL	1단계 이상			
	HSK	HSK 5급 18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중국어	FLEX	701점 이상	러시아어	1 221	702 11 10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 SNULT ∘ FIF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 TEST-DAF는 성적표에 전체영역에 대한 종합점수 없이 각 영역별 개별점수만 나오므로, <u>각 개별영역 모두 기준 점수 이상</u>이어야 함

SNULT

61점 이상

6. 연령 제한 없음

- 7.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 8.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응시 가능
  - □ 응시제한사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61점 이상

-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국비연수 기 수혜자 중 본 사업 외에 국고로 지원되는 1년6개월 이내의 비학위과정연수(예:WEST사업)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Ⅲ.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외국어 시험 성적	20	기 되라된다시 4된 시기
	서류	국사 시험 성적	2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
1차	시사	학업 성적	20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시험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20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2~3배 선발
		1차 시험 합계	100	
	면접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3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2차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
시험	시험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2차 시험 합계	100	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Ⅳ.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차시험	2017. 8. 8.(화)~2017. 8. 11.(금)	2017. 8. 17(목)	2017. 8. 23.(수) 09:00		
2차시험	-	2017. 8. 25.(금)	2017. 8. 31.(목) 17:00		
합격자 교육	-	2017. 9. 6.(수)	-		

#### 1. 2차시험(면접) 세부 사항

- 가. 장소 및 시간 : 1차시험 합격자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
- 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2. 합격자 교육

-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 3. 상기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에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도 있음

## V.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 후 등기우편 제출)

- 1. 접수방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 정부지원장학금 → 국비유학생 신청 → 응시원서 입력 및 출력 → 날인 등을 하여 등기우편 제출(방문 제출 불가)
- 2. 접수기간 : 2017. 8. 8. (화) 09:00 ~ 2017. 8. 11. (금) 18:00
- 3.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국비유학 담당 앞(우편번호 13557)

#### 4. 유의사항

- 가. 전형 및 분야별 중복지원 금지
- 나. 접수기간 외 제출자는 응시 무효.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 다. 우편물 겉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명기

## Ⅵ.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 유의사항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분량이 많은 서류는 요약본 A4 1매 정도 제출
- 별지에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맨 앞에 첨부하고, 서류를 목록순으로 정리

#### 1. 응시원서 1부<서식 1>

- 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 나. 사진(image file 가능)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으로, 'II.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을 사진 위에 날인
- 다. 접수번호, 수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라. 분야는 공고문 내 ' I .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 마. 학업성적은 백분율점수(예 :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 바. 유학대상기관은 5곳까지 작성(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기관 변경 불인정)
- 사. 병력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 (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 (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아.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권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첨부)
- 2. 수험표 1부<서식 2> ※ 2차시험(면접)일에 제출

#### 3. 추천서

- 가. 추천인은 'II.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교수 중에, 본인이 응시하는 세부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교수<서식 3>
- 나. 추천인이 'II. 응시 자격-l'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닌 경우 <서식 4>에 작성
- 다. 〈서식 3, 4 공통〉 학교장 직인란은 'II.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 날인

-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류 목록<서식 5> 및 증빙서류
  - 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 나.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정도)을 작성하여 첨부
  - 다.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라. 실적에는 학회·동아리·학생회·봉사활동, 논문, 수상, 자격증, 취업 경력 등이 해당
-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br>
- 6. 대학졸업증명서 1부
  - 가.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것
  - 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간 성적증명서 제출.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졸업 예정증명서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7.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가.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대학에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 나.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석차, 이수교과목 현황(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다.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8.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에 한함)
  -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및 성적통지표 각1부
  - 시험의 유효기간 없음
- 10. 외국어 시험 성적표
  - 가.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 나.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젂 부여)
  - 다. 동종의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에 대한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 11. 병적증명서나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년월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년월일 명기) 1부(해당자에 한함)
- 12. 저소득층 특별전형(수급권자・차상위계층) 응시자격 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1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

## Ⅷ. 유의사항

- 1.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 □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
  -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배포하는 행위
  - (7)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서명(또는 날인)란을 명기하지 않거나 전자서명(또는 날인)한 서류,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무효 처리
- 3.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4. 제출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VⅢ. 장학금 등 지급

- 1. 장학금
  - 가.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이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액은 붙임 참조)
  - 나. 기준국(미국) 지급액(연간): 일반전형 USD 35.000 / 저소득층 특별전형 USD 50.000
  - 다. 장학금 액수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예산 형편에 의해 출국시기 또는 장학금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실제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사정에 따라 기 발급한 재정보증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라.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 2. 항공료

- 가. 본인의 출·귀국 항공료 결제서류를 제출할 경우, GTR 운임 내에서 실비 지급 나. 다음의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 1) 자비유학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번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
  - 2) 자비유학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 3) 자비유학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 4)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 5)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6) 유학기간 동안 매년 관할공관에 수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나 한번이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IX. 시험합격의 효력 및 유학기관 선정

- 1. 2018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 2.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변경 불인정
- 3. 응시할 시 제출한 유학대상기관 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국·유학기관 변경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 불인정

## X. 기타 사항

-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관리 업무 처리지침('17.4.14)」 참조
- □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국비유학 업무 담당
  - ∘ (전화) 02-3668-1450~2, 1363, 1369, 1375
  - (E-mail) kimdayoung1@moe.go.kr, sy1369@moe.go.kr, theodosia@moe.go.kr

붙임: 장학금 지급액 1부

## 붙임

# 장학금 지급액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 기간>

		- 1		어가 자하고		н ј	<u> </u>	<u> </u>	기신/		
지역	국가		연간	연간 장학금					연간 장학금		
		화폐 단위	일반전형. 기술ㆍ기 능인전형	저소 <del>득층</del>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기간 지역 기간	국가	화폐 단위	일반전형. 기술 · 기 능인전형	저소 <del>득층</del>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지급 기간	
북	미국	USD	35,000	50,000	2년		영국	GBP	25,400	32,900	2년
미	캐나다	CAD	27,800	36,300	2년		네덜란드	EUR	24,014	31,800	3년
	중국	USD	17,751	28,600	3년		덴마크	DKK	189,093	280,000	3년
	일본	JPY	3,181,810	4,396,100	3년	유럽	독일	EUR	17,487	25,200	3년
	터키	USD	17,500	25,000	3년		프랑스	EUR	24,113	35,400	3년
	대만	USD	17,500	25,000	3년		이탈리아	EUR	21,507	30,000	3년
아	싱가포르	SGD	44,241	58,500	3년		벨기에	EUR	20,767	31,100	3년
시	몽골	USD	17,586	25,000	3년		스페인	EUR	17,129	24,900	3년
아	인도	USD	17,500	25,000	3년		노르웨이	NOK	266,408	381,600	3년
뜽	태국	THB	627,240	822,600	3년		핀란드	EUR	22,193	32,800	3년
	인도네시아	USD	17,500	25,000	3년		스위스	CHF	36,400	57,800	3년
	베트남	USD	17,500	25,000	3년		스웨덴	SEK	225,681	299,700	3년
	말레이시아	USD	17,500	25,000	3년		러시아	USD	23,640	33,100	3년
	뉴질랜드	NZD	33,700	54,400	3년		폴란드	EUR	16,719	23,600	3년
	호주	AUD	33,600	54,100	3년		헝가리	EUR	16,719	23,600	3년
_	레바논	USD	20,555	29,700	3년		루마니아	EUR	16,719	23,600	3년
중 동	요르단	USD	18,480	25,000	3년		불가리아	EUR	16,719	23,600	3년
	카타르	USD	27,500	44,000	3년		체코	EUR	16,719	23,600	3년
	케냐	USD	17,500	25,000	3년	년 중 년 남	멕시코	USD	17,500	25,000	3년
아 프 리 카	남아공	USD	17,500	25,000	3년		브라질	USD	19,500	25,000	3년
	가나	USD	26,400	42,200	3년		칠레	USD	17,500	25,000	3년
	이집트	USD	20,000	25,000	3년		아르헨티나	USD	17,700	28,900	3년
	튀니지	USD	17,500	25,000	3년						

- 1)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참고 : NUMBEO, KEB 외환은행, 2017, 1, 2, 기준)
-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3)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특별전형, 기술·기능인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모든 국가 3년 이내 지원
- 4) 2014년도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선발자까지는, 장학금지급액 증액 증빙 서류를 갖추어 증빙 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USD50,000 한도(국가/대학/전공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지원학교 등록금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체재비 지원
- 5)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 장학금: 연간 국가별 장학금액 ÷ 연간일수 X 어학연수기간일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